

**제2561호**  
2018. 01. 1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제2018-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공 고**  
제2018-36호 :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 3  
제2018-3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4  
제2018-42호 :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1-1지구, 제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길 37-5	2018.01.17.	청구로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1.03.02.	청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36호

##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 2018. 1. 15(월) ~ 3. 30(금)
2. 신 고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 리 내 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4. 참 고 사 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3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책임의 명확성 규정(안 제1조~제3조)
  - 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안 제4조~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기본계획 수립 등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안 제6조~제12조)
  -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아동안전 및 건강증진, 아동참여보장,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안 제13조~제21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등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함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3, FAX: 3396-8743, 메일 : wjddls101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아동 안전)**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참여 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
-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
-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의원
- 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정·회회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42호

##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1-1지구, 제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되었다가,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에서 변경(통합)된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제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태평로2가, 서소문동, 남대문로4가 일대	91,488.5	-	91,488.5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서소문동 58-9일대	3,897.6	3,897.6	-	-
변경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서소문동 58-9일대	4,382.8	3,897.6	485.2	-
기정	서소문구역 제12-1지구	서소문동 58-13일대	1,133.7	1,133.7	-	-
변경	서소문구역 제12-1지구	서소문동 58-13일대	1,319.2	1,133.7	185.5	-

※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개별사업 시행시 공공시설 부담 면적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11-1지구 건축물(공공청사)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153.1㎡)은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

## 나.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11-1지구				12-1지구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897.6	증) 485.2	4,382.8	100.0	1,133.7	증) 185.5	1,319.2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	증) 485.2	485.2	11.1	-	증) 185.5	185.5	14.0
	도로	-	증) 280.9	280.9	6.4	-	증) 185.5	185.5	14.0
	공공청사	-	증) 204.3	204.3	4.7	-	-	-	-
택지(획지)	소계	3,897.6	-	3,897.6	88.9	1,133.7	-	1,133.7	86.0
	대지	3,897.6	-	3,897.6	88.9	1,133.7	-	1,133.7	86.0

##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구분	지구명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일반상업지역	제11-1지구	3,897.6	-	3,897.6	100.0	
	제12-1지구	1,133.7	-	1,133.7	100.0	

## 나) 용도지구

## (1)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중구 태평로2가 340-6 일대	17,414.58 (1,086.4)	895 (77)	14~22 (14)	-	-

※ ( )는 11-1지구 해당사항임

## (2) 방화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방화지구	중구 서소문동 120-23 일대	91,488.5 (234.8)	-	-

※ ( )는 11-1지구(174.8㎡), 12-1지구(60.0㎡) 해당사항임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	35~40	주간선도로	일반 도로	430	태평로2가 340-6	서소문동 58-26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지구내 280.9㎡
기정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 도로	72	서소문동 58-12	서소문동 58-13	-	-	-
기정	중로	2	232	15	집산도로	일반 도로	345	순화동 7-2	봉래동1가 25-7	-	서울시고시 제380호 (1981.10.21)	지구내 55.5㎡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공동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규모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	공동구	서소문동 58-9 일대	B = 2.2m L = 40.0m	88.0	감) 88.0	-	서울시고시 제267호 (1977.8.4.)	중앙일보, 동양방송 지하 공작물

■ 공동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동구	· 공동구 폐지 - 위치 : 서소문 58-9 일대 - 규모 : B=2.2m, L=40.m - 면적 : 88.0㎡	· 11-1, 12-1지구 정비계획변경으로 인한 공동구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서소문동 122 일대	843.2	-	843.2 (204.3)	-	-

※ ( )는 11-1지구에서 부담하는 면적임

(2)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60 이하	800 이하	90 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공공청사(건축물)는 11-1지구에서 부담토록 함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 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토지) 부담율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율	합계	
11-1 지구	4,382.8	3,897.6	485.2	-	-	153.1	10.6	3.4	14.0	-
12-1 지구	1,319.2	1,133.7	185.5	-	-	185.5	14.0	-	14.0	-

5)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3,897.6	-	3,897.6	서소문동 58-9 일대	-	60이하	600/800/α	90이하	-
변경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4,382.8	-	3,897.6	서소문동 58-9 일대	업무, 숙박시설	60이하	970이하	90이하	-
기정	서소문구역 제12-1지구	1,133.7	-	1,133.7	서소문동 58-13 일대	-	60이하	600/800/α	90이하	-
변경	서소문구역 제12-1지구	1,319.2	-	1,133.7	서소문동 58-13 일대	숙박시설	60이하	970이하	90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11-1지구)	용적률 : 970.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도시경제활성화		관광진흥법상 1성급 호텔이상 도입시				정량부여	40%		
	공공보행통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설치시				정량부여	30%		
	보행가로 활성화 용도 설치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30%		
	③ 상한용적률 : 170.2%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공공청사 유상매입)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		800%×1.3×0.1244		129.4%				
건축물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α=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800%×1.3×0.0392		40.8%				
계				-		170.2%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12-1지구)	· 용적률 : 970.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m <sup>2</sup> ·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도시경제활성화	관광진흥법상 1등급 호텔이상 도입시	정량부여	100%
	공공보행통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설치시	정량부여	30%
③ 상한용적률 : 170.2%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	800%×1.3×0.1636	170.1%	
계		-	170.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통일로2길변 3m, 세종대로7길변 10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서소문로변 3층 초과 8m, 통일로2길변 3층 초과 6m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간선가로변(서소문로, 세종대로7길)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경 배치			

다. 기 타

- 1) 공람기간 : 2018.01.17. ~ 2018.02.19.(33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